

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31556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315562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43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단체

피고, 피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현석, 안정현

2. D

변론종결 2022. 5. 18.

판결선고 2022. 6. 2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435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F 사이에 2019. 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F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25. 접수 제5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F 사이에 2019. 3. 6.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F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3. 8. 접수 제16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나. 3) 사해행위 여부’까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선의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2) 을가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11. 8. 피고 C의 배우자 M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 다음날 F이 위 수표를 친척 N에게 지급하여 같은 날 N의 계좌에 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계좌의 기록사항에는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은 2018. 8.경 G으로부터 농업인 조합원 확인을 위하여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조합원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사실, F과 피고 C 사이에 2019. 1. 2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9. 1. 25. 피고 C을 대리하여 법무사 O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한 사실, 위 부동산 매매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 C은 현재 G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2011. 11. 8. F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가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과 그의 처 P이 피고 C에게 별지 변제내역 및 총당표 기재(단, 순번 27번 22,000,000원은 제외)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전 지급액이 31,400,000원, 그 후 지급액이 47,300,000원이다.

3) 피고 C은 위 대여금 50,000,000원의 변제 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C과 F은 위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월 400,000원(연 9.6%)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전까지 F으로부터 이자를 변제받아 오다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22,000,000원에 해당하는 채무를 대물변제 받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F의 처 P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오다가 2020. 9.경 원금 30,000,000원만 갚으면 위 대여금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약정하고 채무를 변제받았다. 다만 별지 표 순번 51번 2021. 12.

6. 5,000,000원은 P이 피고 C이 뇌출혈로 이 사건 변론을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미안한 마음에 변호사 선임료를 제공한 것이다.

4) 살피건대, 피고 C의 위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F 부부가 지급 또는 대물변제한 금액을 원리금에 충당하면, 9,920,157원을 초과 변제한 셈이 되고, 순번 51의 변호사 선임료를 제외하더라도 4,920,157원을 초과 변제한 것이 된다. 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으로 22,000,000원이 대물변제 되었다면 원금이 31,212,589원이 남게 되고 그에 대한 월 이자는 월 249,700원($= 31,212,589원 \times 0.096 \div 12$)인데도 2020. 9.까지 월 400,000원, 즉 원금 50,000,000원의 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 이는 피고 C과 F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후에도 대여원금을 50,000,000원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대물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고, 설령 피고 C과 F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피고 C이 원금 30,000,000원을 받고 위 대여금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2020. 9.경 이후라고 볼 수 있다. ③ F 부부가 다액의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서도 피고 C에게는 변호사 선임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가 F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피고 C이 F의 집행면탈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5) 전항에서 살펴 본 사정에다, 피고 C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F과 피고 C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역 선후배로 평소 잘 알고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고 또한 피고의 처 M은 오랜 기간 P의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해 온 점, F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다른 부동산(감정가액 530,000,000원 상당)을 소외 Q에게 매도하였는데, R조합이 Q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Q으로부터 553,000,000원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R조합장의 2022. 5. 2.자 사실조회회신), 피고 C 부부와 F 부부의 관계로 보아 Q에 대한 부동산 매매사실을 피고 C 부부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항에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 D의 선의 여부

1)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의 배우자 E이 2018. 9. 29. F의 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4,689,300원인 사실(을나 제3호증), 위 부동산 매매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 D는 현재 위 부동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위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포항시 남구 L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21. 10. 25.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의 처 P은 피고 D의 처 E의 이모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E이 F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지 6개월이 경과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점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게 하고 위 5,000,000원 지급이 매매대금 지급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위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D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 C은 F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는 F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박치봉, 판사 서영애, 판사 김형태

별지